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위생과-2799
등록일자	2016.2.1.
결재일자	2016.2.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공중위생팀장	위생과장	보건소장		
협조자					
★주무관					

행복을 느끼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세계 속의 강남

2016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추진방향

- 
❖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
 - 민·관 합동 지도점검 확대, 영업신고 업소 시설 조사
 - 위생처리업 · 먹는물 수거 검사
 - 공중위생업소 안전점검 실시, 테마별 지도 점검 등
- 
❖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질적 향상
 - 영업자 스스로 참여하는 인터넷 자율점검 관리
 - 목욕장 위생검사(수질검사)
 - 공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 
❖ 공중위생업소 경쟁력 제고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평가 및 공표
 - 무신고 영업행위 단속 · 고발
- 
❖ 구민이 함께하는 행정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활성화 ● 투명행정 실현
 - 호사랑헤어삼 확대운영 ● 경로호친사상 실천운동 확산



주민만족도 향상 + 건강증진

2016. 2. .

강 남 구
(위 생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규정 및 근거	<p>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2013.10.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2호) •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2009.09.04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9호) 																																				
추진경위	<p>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시설 등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예산사항	<p>산출 근거 및 기준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 40,700천원 - 지급기준 : 1인/1일 50,000원 • 민관합동 점검 등 사전예고 안내문 발송 등 우편료 : 5,880천원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 3,340천원 																																				
수혜자 및 범위	<p>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업소 이용 주민 																																				
분야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p>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①</td> <td style="width: 75%;">관련부서 협조</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right;">-----</td> <td style="width: 5%; text-align: right;">(○)</td> </tr> <tr> <td>②</td> <td>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③</td> <td>추진상 사전 걸림돌</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④</td> <td>미래행정 수요예측</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⑤</td> <td>시장조사</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⑥</td> <td>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⑦</td> <td>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⑧</td> <td>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⑨</td> <td>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able> <p>• 상기 사항에 대한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이 없음</p>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타기관 사례	<p>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지침에 의거 25개 전 구청에서 자체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p>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히 전문가 자문 불필요 사항임 																																				

목 차

I	추진근거	1
II	추진방향	1
III	추진개요	2
IV	2015년 추진실적	3
V	문제점 및 대책	14
VI	2016년 추진목표	15
VII	2016년 추진계획	1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지도점검 2. 공중위생업소(목욕장) 수질검사 3. 공중위생업소 인터넷 자율 점검 4.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5.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6. 위생처리업 위생점검 및 물수건 수거 검사 7. 무신고 공중위생 영업행위 단속 8. 공중위생 영업신고 등 9.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10. 공중위생업소 안전점검 11. 효사랑 헤어샵 확대운영 12. 테마별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VIII	소요예산	23
IX	기대효과	23
X	행정사항	24

2016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정례적인 지도·점검과 청결하고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I 추진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2호
-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9

II 추진방향

- ❖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
 - 민·관 합동 지도·점검 확대, 영업신고 업소 시설 조사
 - 위생처리업·먹는물 수거 검사
 - 공중위생업소 안전점검 실시, 테마별 지도·점검 등
- ❖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질적 향상**
 - 영업자 스스로 참여하는 인터넷 자율점검 관리
 - 목욕장 위생검사(수질검사)
 - 공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 ❖ **공중위생업소 경쟁력 제고**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평가 및 공표
 - 무신고 영업행위 단속·고발
- ❖ **구민이 함께하는 행정**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활성화 ● 투명행정 실현
 - 호사랑해어삼 확대운영 ● 경로호친사상 실천운동 확산

주민만족도 향상 + 건강증진

Ⅲ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016. 1. 1 ~ 12.31

□ 관리대상 : 공중위생업소 7개 업종 3,082개 및 공중이용시설

○ 공중위생업소 현황

(2016. 1. 1현재 / 개소)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용역업	위생처리업
3,082	144	118	105	1,963	391	360	1

○ 공중이용시설 현황

(2016. 1. 1현재 / 개소)

계	업무시설 (3,000㎡이상)	복합건축물 (2,000㎡이상)	혼인예식장 (2,000㎡이상)	공연장 (1,000석이상)
1,526	237	1,274	13	2

□ 공중위생업소 업종별 변동 추이(최근 5년간)

연도	합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용역업	위생처리업
'16	3,082	144	118	105	1,963	391	360	1
'15	2,970	140	119	113	1,849	393	355	1
'14	2,855	139	125	116	1,734	399	341	1
'13	2,853	145	130	120	1,711	412	333	2
'12	2,548	133	112	120	1,460	387	335	1

▲ 증가업종 : 미용업, 위생관리용역업

- 미용업 :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미용서비스 이용 수요 증가 및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에 따른 미용업의 세분화(일반, 피부, 손·발톱, 화장분장 등)
- 위생관리 용역업 : 대형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청소대행업체 증가

▲ 감소업종 : 이용업

- 이용업 : 유사한 업종인 미용업은 서비스 개선, 다양한 기술 개발 등으로 업종의 이미지업그레이드를 통해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영업주의 연령이 고령이고 남성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용업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
- 목욕장업 : 소비자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목욕장의 대형화 및 생활스포츠 활성화로 공중목욕장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
(헬쓰장, 문화센터 등의 시설이 고급화 됨에 따라 부대시설인 샤워장 등 간이 목욕시설 활용)

□ 추진인원 : 공중위생팀장 외 직원 2명

※ 업무지원(현장 확인) : 강남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2명

□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 공중위생업소 시설·위생 기준 등 민관합동 지도점검
- 공중위생업소 수질검사, 서비스 수준평가,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
- 무신고 공중위생 영업행위 단속
-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운영
- 공중위생업소 안전점검 실시
- 효사랑헤어샵 확대 운영 등

IV 2015년 추진실적



1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결과

□ 지도점검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연도별	공 중 위 생 업 소								공 이 시	중 용 설
		소계	숙박	목욕 장	이용	미용	세탁	위 생 용역업	위 생 처리업		
대상업소 (2015.12.31기준)		3,082	144	118	105	1,963	391	360	1	1,526	
점 검 업 소	2015년	6,566	266	286	260	4,502	624	626	2	94	
	2014년	4,218	324	428	122	2,249	742	268	83	83	
	2013년	5,207	241	221	227	4,087	213	215	3	60	
	2012년	3,321	399	320	67	1,626	480	423	6	100	

※ 점검률 증가 사유 : 점검률'14년 대비 '15년 55.6% 증가

- 2015년도 공중위생업 서비스평가 대상 업소 증가 : 1,319개소 증가

※. 2014년도 607개소, 2015년도 1,926개소

- 위생교육미필(신규,보수) 및 폐업신고 미이행 일제조사 실시 : 과태료 202건 부과

□ 년도별 위반업소 적발실적

(단위 : 개소)

연도별	점검업소	적발업소	행정처분	비고
2015년	6,566	235	235	· 2014년 행정처분 대비 190%(155) 증가
2014년	4,218	80	80	· 2013년 행정처분 대비 29.8%(34건) 감소
2013년	5,207	114	114	· 2012년 행정처분 대비 15.6%(21건) 감소
2012년	3,321	135	135	· 2011년 행정처분 대비 193%(89건) 증가

※ 2014년대비 2015년 행정처분 증가 사유

- 위생교육미필(보수,신규) 및 폐업신고미이행 일제 조사 실시

□ 업종별 위반유형(2015년도)

(단위 : 개소)

업종명	위 반 내 용										행 정 처 분 내 용								
	계	시설 기준	위 생 관 리 기준등	영 업 정 지	영 업 중 업	교육 미 필	성 매 장 계	매 · 소 공	풍 속 위 반 (도 박)	청 소 년 보 호 법 위 반	의 료 법 위 반 (안 마 등)	무 단 폐 업	계	경 고	개 선 명 령	영 업 정 지	과 징 금	면 허 정 지	영 업 장 폐 쇄
계	235	9	2	1	143	12	-	2	4	62	235	4	9	13	6	-	1	202	
숙박업	12					10		2			12			11	1				
목욕업	7	4		1		1			1		7	1	3	1	1			1	
이용업	2				1	1					2			1					1
미용업	80	5	2		28				3	42	80	1	6		4				69
세탁업	1									1	1								1
위생관리 용역업	133				114					19	133	2							131
위 생 처 리 업	-										-								

※ - 단속(적발)기관 : 구청 218건, 경찰 17건

- 시설기준 : 객실불투명설치, 소독기미설치, 위법배관 등

- 위생관리기준 등 : 영업자준수사항, 옥외가격표시제 등



2 무신고 공중위생 영업행위 단속

- 추진기간 : 2015. 1. 1 ~ 12. 31
- 단속대상 : 무신고 공중위생 영업행위 업소(민원 신고업소 중점 단속)
- 단속인원 : 공중위생팀장 외 직원 2명
- 단속실적

(단위 : 개소)

연도별	계	미 용							숙박	목욕	이용	세탁	위생관리 이용역
		소계	염색방	네일	피부	메이크업	일반	종합					
2015년	20	15		1	12		2		5				
2014년	63	53		10	30		11	2	10				
2013년	39	25	1	13	10	1			12	1		1	
2012년	40	37	16	14	5	2			2				1

- ※ - 고발건수 2014년 대비(63건→20건) 68% 감소
- 감소사유 : 손톱발톱 및 화장분장 등 업종 세분화로 인한 단속유예(보건복지부)
- ☞ 무신고 미용업 자격취득 및 영업신고 안내 등 행정지도

- 행정조치 : 형사고발



3 목욕장 위생점검(욕조수 수질검사) 결과

- 추진기간 : 2015. 3. 24 ~ 4. 23
- 대상업소 : 117개소(목욕장)
 - ※ 제외업소(9) : 휴업(3), 공사중(5), 건식사우나(1)
- 점검인원 : 11명(명예공중위생감시원 8명, 직원 3명)
- 점검결과

(단위 : 개소)

1차 점검				2차 점검					
계	적합	부적합		계	적합	부적합	부적합 내역		
		수질검사	위생점검				탁도	과망간산칼	산소
108	107	1	-	1	1	-	-	-	-

- 1차 점검 : 수질검사 및 위생점검 108개소
- 2차 점검 : 1차 수질검사 부적합 업소 1개소

※. 목욕장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기준 점검 병행 : 6개업소 행정지도

- 목욕실 등의 청결 (소독 여부, 찜질방내 대여용품 및 세탁실 위생상태)
-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여부
- 조명 및 환기 등 기타 준수사항 등

☞ 즉시 행정지도

□ 조치사항

- 위생점검 부적합 업소(6개소) : 신고증미게시, 조명 등 즉시 개선조치
- 수질검사 1차 부적합 업소(1개소) : 2차 검사 ☞ 적합 판정



4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결과

- 추진기간 : 2015.10. 12 ~ 2016.2.28
- 평가대상 : 2,113개소(이용업 107, 미용업 2,006)
- 평가인력 : 25명(명예공중위생감시원 22명, 공무원 3명)
- 평가방법 : 평가 항목표 및 지침에 의한 현장방문 조사 및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단위 : 개소)

구분	계	이용	미용 (종합)	미용 (일반)	미용 (피부)	미용 (손발톱)	비고
관내업소수	2,113	107	802	670	456	78	미실시 업소 : 185개소 - 휴폐업 151개소 - 공사중 34개소
평가업소수	1,928	100	745	629	388	66	
미실시업소수	185	7	57	41	68	12	
평가실시율	100%	100%	100%	100%	100%	100%	

- ※ 평가대상 : 2015.10.1.까지 신고 된 업소수(단, 공사중·휴업 등 업소 제외)
- 미용업(화장·분장)은 신설 업종임을 감안하여 2015년도 평가에서 제외.
 - 미용업 중 일반+피부, 일반+손톱·발톱, 피부+손톱·발톱으로 영업신고 받은업소는 1개 신고증으로 영업신고를 받았더라도 각 업태별로 따로 평가실시.
 - 법적준수사항 미 충족업소 개소 351개소 자진정비이행 기간 부여 : 2016.2.28.
[법적준수사항 미충족: 이용7, 미용344(종합 126, 일반 108, 피부 91, 손발톱 19)]

※ 2015.12.31자 기준 대비 업소수 +45개소

□ 등급결정 : 녹색등급 79.46%

(단위 : 개소)

구 분	등 급	이용	미용 (종합)	미용 (일반)	미용 (피부)	미용 (손발톱)	총계 / %	비 고
관내업소수		107	802	670	456	78	2,113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90	597	512	286	47	1,532 / 79.5	-준수사항 100%충족 중 -90점이상 업소만 해당
우수업소	황색등급	2	18	9	10	-	39 / 2	-준수사항 미충족, 90점이상 및 -총점 80점~90점미만
일반관리	백색등급	8	130	108	92	19	357 / 18.5	-총점 80점 미만 -법적준수사항 미충족업소
계		100	745	629	388	66	1,928	
평균득점		93.43점	87.11점	87.88점	84.18점	80.71점		

※ 법적준수사항 중 미준수사항이 1건 이상 있을 경우 법적준수사항 전체점수 0점 처리

□ 기타 특이사항

- 서비스평가항목에 기타(홍보 등) 추가 : 위생교육 및 폐업신고 이행 의무 안내 병행 ⇒ 평가점수 미반영
- 업종별 서비스 평가 시 최종지불요금표 표시제 및 의료기기사용 행위 중점 점검 및 제도 병행
- 미용업 등급안내 공문 발송 시 무자격안내행위 및 의료기기사용 등 불법행위 금지 안내
- 등급 안내문 발송 시 효사랑헤어샵 모집 안내문 및 신청서 동봉(우편료 절감)
- 안내문 및 신청서 서식 청렴로고 삽입

□ 분석내용

- 법적 준수사항 미충족업소 업소 351개소에 대하여 자진정비토록 하고, 미이행 시 현장점검하여 위반내용 적발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 백색등급(80점미만)을 받은 총357개소는 “관리대상업소”로써 꾸준한 지도·점검이 필요함.



5 공중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결과

- 추진기간 : 2015. 5. 1 ~ 9. 14
 - 점검대상 : 총 7개 업종 3,015개 업소
 - 점검사항 : 업종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 점검방법 :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gangnam.go.kr>)에 영업주가 자율점검 항목표(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직접입력
-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업소는 FAX로 점검표 접수 입력(1,127건)

□ 자율점검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숙박업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업 응역업	위생처리업
점검대상 (2015.5.1.기준)	3,015	140	118	109	1,885	396	366	1
미제출/폐업소 (2015.5.1~7.10)	361/32	14/2	13/1	11/0	208/20	49/4	66/5	0/0
점검완료 (2015.5.1~7.20)	2,622	124	104	98	1,657	343	295	1
참여율(%)	87.9	89.9	88.9	89.9	88.8	87.5	81.7	100

※ 2015.12.31자 기준 대비 업소수 △67개소

□ 분석내용 : '14년 참여율 81.2%대비 6.7% 증가

- 참여율 증가 사유로는 2차에 걸친 안내문 발송, 팩스접수, 자율점검기간 연장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임.
- 인터넷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는 업주의 연령이 높아 컴퓨터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자율점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파악됨.
- 꾸준한 홍보를 통하여 영업주의 자율적인 위생점검 마인드를 향상시켜 공중위생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됨.



6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 추진기간 : 2015. 6. 1 ~ 9.18

□ 점검반 : 1개조 총3명(공무원1, 명예공중위생감시원2)

□ 측정대상 : 총 94개소 (표본측정)

□ 측정항목 : PM10(미세먼지), co₂ (이산화탄소), co(일산화탄소), HCHO(포름알데히드)

□ 측정방법 : 시설 당 2개 지점 선정 현장(간이)측정

□ 측정결과

(단위 : 개소)

구 분	계	공중이용시설(71)				기타시설(12)
		업무시설 (연면적3,000㎡이상)	복합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공연장 (1,000석이상)	혼인예식장 (1,000석이상)	소규모 어린이집 (430㎡이하)
대 상	94	10	58	2	13	11
적 합	80	6	51	2	13	8
부적합	14	4	7	.	-	3

※ 전년(2014년) 대비 부적합 시설 7건 감소

- 부적합 업소 조치사항(14개소) : 실내공기질 개선 안내문 발송 및 2차 측정
- 2차 측정(점검)결과 : 14개 부적합시설 ⇒ 적합
- 분석내용

- 2015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포름알데히드가 9개 시설이 초과되었고, 이산화탄소가 5개 시설이 초과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세먼지 및 일산화탄소 부적합 시설은 없었음.
- 포름알데히드 초과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으로 인해 잦은 소독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짐.
-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 관리에 관한 안내와 개선권고를 하였으며 재측정을 통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실내공기에 대한 관심을 제고 시켰음.
-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연장, 혼인예식장 등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



7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결과 (2015년 활동비 예산 : 100% 집행)

- 관련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 2, 동법시행령 제9조의 2
- 운영기간 : 2015. 1. 1 ~ 12. 31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 32,560천원 (단위 : 개소/명/천원)

점 검 내 용	점검업소	점검인원	활동비(천원)
욕조수 수질검사(목욕장업)	108	40	1,600
무 단 폐 업 사 실 조 사	195	65	2,600
시설 및 위생관리기준 점검 등	290	115	4,600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94	56	2,240
서비스 수준평가(이용, 미용업)	1,928	466	18,640
인터넷자율점검(공중위생7개업종)	1,471	72	2,880
계	4,086	814	32,560

※ - 명예공중위생감시원(22명) : 2015. 7. 1 서울특별시장 위촉(1인/1일 활동비 40,000원)
 - 2016년 활동비 상향조정 : 4만원→5만원



8 공중위생 영업신고 민원처리 실적

□ 2014년 대비 : 1,286건 → 1,309건(1.8% 증가)

(단위 : 개소)

구 분	계	신규	변경신고	지위승계	폐업	재교부
2015년	1,309	454	341	151	352	11
2014년	1,286	443	321	172	338	12
2013년	1,154	350	288	167	337	12
2012년	1,134	429	233	172	291	9



9 특정관리대상 시설 점검 결과(숙박업) - 년 2회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점 검 기 간	2015.04.01. ~ 2015.04.17	2015.10.19. ~ 2015. 10.23										
점 검 대 상	숙박시설 45개소 (연면적 1,000㎡~5,000㎡) ※ 관광호텔제외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진흥과에서 점검	숙박시설 14개소 (연면적 1,000㎡~5,000㎡, 준공 15년이상 경과 시설물)										
점 검 방 법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현지 방문점검											
점검반 편 성	외부전문가로 점검반 구성 (강남구건축사협회(3),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점 검 결 과	안전등급					안전등급						
	A	B	C	D	E	제외	A	B	C	D	E	제외
	이상이 없는 시설	지속적 관찰 필요	보수보강 필요	간헐적 보수보강 필요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개보수공사 중	이상이 없는 시설	지속적 관찰 필요	보수보강 필요	간헐적 보수보강 필요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개보수공사 중
	0	44	0	0	0	1	0	14	0	0	0	0
조 치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전차단기 미설치 : 1개소, • 마감재 상태 미흡 : 1개소 • 개선통보 → 2015.05.29.이행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분야 : 부적합 1개소 •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미설치 • 시정통보 → 2015.11.10시정완료 					
개 선 사 항	①점검자 사전교육 • 현장점검 건축사 등 청렴 및 사전 친절교육 ②건축사 등 현장점검 시 담당직원1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명 동행						①점검자 사전 교육 • 현장점검 건축사 등 청렴 및 사전 친절교육 ②점검반 현장점검 시 공무원 동행 원스탑 처리					
분 석 내 용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결과 재난위험시설에 해당하는 D·E등급은 없었음. 특히, 하반기에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4개 기관(가스, 전기, 건축사, 구청)이 합동으로 방문하는 원스탑점검으로 업소의 부담을 줄여,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민원을 해소하였음.											



10 위생교육미수료 과태료 부과 및 무단폐업 사실 조사 결과

- 추진기간 : 2015. 1. 1 ~ 12. 31
- 추진대상 : 총 7개 업종 195개 업소
- 추진방법 : 2014위생교육미필업소 중 등기반송 및 2회이상 위생교육미필업소 등 무단폐업 의심업소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 추진결과(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건수)

구 분		합 계	숙 박	목욕장	세 탁	이 용	미 용	위생관 리용역
교육 미필	신규	3	-	-	-	-	1	2
	보수	90	-	5	1	1	28	55
폐업신고미이행		52	-	-	-	-	33	19
계		145	0	5	1	1	62	76

- ※ 1. 교육수료확인자, 폐업신고업소 및 기 폐업신고 미이행 과태료 부과 업소 제외.
 2. 과태료 부과 기준 ☞ [관련근거: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7조 및 제22조]
 1) 2014위생교육미필업소 행정처분(과태료부과) : 93개소
 ① 기존영업주 보수교육 미필 :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 90개소
 ② 신규 및 지위승계자 교육미필 : 경고 ☞ 3개소
 2) 폐업신고 미이행 업소 : 과태료 30만원 ☞ 52개소



11 불법 숙박업소 합동점검 결과

- 관련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점검대상 : 불법 숙박업소(무신고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스 등)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점검 기간	2015.4.20. ~ 2015.4.24	2015.9.24. ~ 2015.9.25
점검 인원	5명 (문체부1, 관광경찰대2, 관광진흥과1, 위생과1)	4명 (문체부1, 관광경찰대2, 관광진흥과1, 위생과1)
점검 결과	점검업소 15개소 중 무신고 숙박업 3개소 적발	점검업소 10개소 중 무신고 숙박업 5개소 적발
조치 내용	관광경찰대 이첩	

12

위생처리업(물수건) 위생점검 및 수거 검사 실시 결과

구분	상반기	하반기
수거일자	2015.5.27	2015.10.14
대상업소	신성기업(물수건 제품 2종) (논현로24길 29)	
수거수량	물수건 2종류 각 30개 (2015-물수건-1, 2015-물수건-2)	물수건 2종류 각 30개 (2015-물수건-3, 2015-물수건-4)
검사항목	외관, 이물, 이취, 대장균, 세균수, 중금속	
검사기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검사결과 : 적합〉	

13

시중유통(마트·편의점) 먹는물 수거 검사 실시 결과

구분	상반기	하반기																														
수거일자	2015.7.9	2015.12.16																														
대상업소	SSG푸드마켓	신세계SSG청담																														
수거품목 및 수량	<table border="1"> <thead> <tr> <th>제품유형</th> <th>제품명</th> <th>용량(L)x수량</th> </tr> </thead> <tbody> <tr> <td>먹는샘물</td> <td>볼빅</td> <td>1.5Lx10개</td> </tr> <tr> <td>먹는샘물</td> <td>피지워터</td> <td>1Lx14개</td> </tr> <tr> <td>해양심층수</td> <td>천년동안</td> <td>1.2Lx10개</td> </tr> </tbody> </table>	제품유형	제품명	용량(L)x수량	먹는샘물	볼빅	1.5Lx10개	먹는샘물	피지워터	1Lx14개	해양심층수	천년동안	1.2Lx10개	<table border="1"> <thead> <tr> <th>제품유형</th> <th>제품명</th> <th>용량(L)x수량</th> </tr> </thead> <tbody> <tr> <td>먹는샘물</td> <td>볼빅</td> <td>1.5Lx10개</td> </tr> <tr> <td>먹는샘물</td> <td>백산수</td> <td>0.5Lx26개</td> </tr> <tr> <td>먹는샘물</td> <td>피지워터</td> <td>1Lx14개</td> </tr> <tr> <td>먹는샘물</td> <td>티난트</td> <td>0.5Lx26개</td> </tr> <tr> <td>해양심층수</td> <td>천년동안</td> <td>0.35Lx39개</td> </tr> </tbody> </table>	제품유형	제품명	용량(L)x수량	먹는샘물	볼빅	1.5Lx10개	먹는샘물	백산수	0.5Lx26개	먹는샘물	피지워터	1Lx14개	먹는샘물	티난트	0.5Lx26개	해양심층수	천년동안	0.35Lx39개
제품유형	제품명	용량(L)x수량																														
먹는샘물	볼빅	1.5Lx10개																														
먹는샘물	피지워터	1Lx14개																														
해양심층수	천년동안	1.2Lx10개																														
제품유형	제품명	용량(L)x수량																														
먹는샘물	볼빅	1.5Lx10개																														
먹는샘물	백산수	0.5Lx26개																														
먹는샘물	피지워터	1Lx14개																														
먹는샘물	티난트	0.5Lx26개																														
해양심층수	천년동안	0.35Lx39개																														
검사항목	총대장균, 납, 페놀, 불소 등 (먹는샘물 49, 먹는해양심층수 52항목)																															
검사기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검사결과 : 적합〉																															

□ 운영기간 : 2015. 4. 1 ~ 12. 31

- 운영형태 : 관내 70세이상어르신 『(孝)사랑 헤어샵』 이용 시 20~50% 할인

□ 효사랑헤어샵 협약 및 현판식 개최 : 2015. 4. 1

- 협약주체 : 강남구/(사)한국이용사회강남지회/(사)대한미용사회강남지회

□ 효사랑헤어샵 업소 현황

구분	계	개포	일원	수서	세곡	대치	역삼	논현	삼성	청담	신사
계	50	8	2	1	2	4	4	9	4	4	12
미용	44	5	2	1	2	3	3	9	4	3	12
이용	6	3				1	1			1	

□ 운영실적

이용인원(명)				할인금액(천원)				비고
2분기	3분기	4분기	계	2분기	3분기	4분기	계	
535	546	625	1,706	5,809	6,277	6,857	18,943	

※신청할인율 20~50%상향 조정(자발적 참여), 지정해제 3개소(폐업2, 취소1)

□ 효사랑 업소 운영관련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요청

- 송파구, 종로구, 성동구, 노원구, 광주광역시 서구청

□ 분석내용

- 효사랑 헤어샵 운영이 경로효친사상 확산 및 건전한 업소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는지의 주민설문 조사결과 81%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함
- 당초 비예산으로 추진한 효사랑헤어샵은 모집 당시 영업주가 자발적으로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며 효사랑 참여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여줬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희석 되는 것으로 보여져 효사랑 운영의 예산을 확보하여 간담회, 우수업체 표창, 위생용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정업소에 자긍심과 참여 동기부여가 필요함.
- 효사랑 전개운동은 올해 음식점 200개소, 헤어샵도 53개업소를 추진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사업인 바, 참여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와 홍보로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증가

○ 게스트하우스 및 레지던스 영업행위 민원신고 증가

-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오피스텔(업무시설)을 「레지던스」라는 명칭으로 호텔식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및 빌라 및 아파트 등을 임대하여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으로 블러그 등을 통해 홍보·영업하는 숙박업소가 성행하여 단속민원 발생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관할 경찰서 고발조치 밖에 없음.

○ 대 책

- 공중위생관리법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영업장 폐쇄조치 조항(2015.12.31.본회의 대안가결 사항)

□ 미용업소에서의 무자격안마행위 및 불법의료기기 사용

- KBS 1TV 똑똑한 소비자리포터(2016.1.15.)에서 미용업소에서의 고가의 화장품 강매, 무자격안마행위 및 불법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사례 보도
- 대 책 : 관련협회 및 미용업소에 대하여 협조 공문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2015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시 불법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 자진정비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영업장 점검을 통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가 필요함.

□ 옥외가격표시제 시행(2013.1.13)후 문제점 제기

- KBS 1TV 뉴스(2014.6.26.), 문화일보(2015.1.23.) 및 TBS 교통방송(2015.3.12.)등에서 옥외가격표시제이행이 유명무실하다는 보도자료와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2014.6.26.) 등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대 책 : 2013년부터 3년동안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계도를 하였으며,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옥외가격표시제(최종지불요금표) 일제 점검·단속이 필요.

□ 2014 보건소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및 꾸준한 민원발생

- 공중위생업 교육 미이수자 및 폐업신고 미이행자 과태료 미부과
- 대 책 : 2015년 공중위생업 위생교육 미필자 과태료 부과와 연계, 폐업신고 미이행 업소의 과태료부과를 단계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진행이 필요.

□ 직원 2명이 서울시 타구의 2~3배가 많은 공중위생업소(7개업종 3,082개소) 및 공중이용시설(1,526개소) :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 대 책 : 공중위생팀 직원 1명 충원(2명 → 3명) 필요.

VI 2016년 사업목표

사업목표명	목 표	비 고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지도점검률	4,000개소 이상	업소별 1회 이상
공중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율	90%	
공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측정	100%	서울시지침에 의거 실시 '15년 94개소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실시율	100%	숙박·목욕장업·세탁(653) ※ 공사중 휴업 업소 제외
효사랑 헤어샵 확대 운영	80개소	30개소 추가모집

VII 2016년 추진계획

사업별 추진일정

단위 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사업진도	100%	20%	30%	30%	20%
소요예산	49,920천원	9,984	14,976	14,976	9,984
1. 공중위생업소 민관 합동 지도점검					
2. 공중위생업소(목욕장) 수질검사		—————			
3. 공중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		
4.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	—————	
5.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	
6. 위생처리업 위생점검 및 물수건 수거검사			—		—
7. 무신고 공중위생 영업행위 단속					
8. 공중위생 영업신고(신규·변경·승계·폐업)시설조사					
9.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10. 공중위생업소 안전점검 실시			—————		—————
11. 효사랑 헤어샵 확대운영					
11. 공중위생업소 테마별 지도·점검					
1) 옥외가격표시제 지도·점검			—————		
2) 무단폐업 업소 일제 조사				—————	
3) 공중위생업소 특별 지도·점검 등					—————



1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지도·점검

- 추진기간 : 2016. 1. 1 ~ 12. 31
- 점검대상 : 신규·주소변경 신고업소, 민원발생 업소 등
- 점검인원 : 25명(직원 3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2명)
- 점검내용 : 업종별 시설설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등

업종별	시설·설비 기준	위생관리 기준
숙박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사시설과 환기시설(창문) 설치(생활형) ·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 설치(생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소 내 매월 1회 이상 소독 실시 · 객실 침구, 수건 청결 유지(1인 사용시 마다 세탁) · 환기용 창 수시개방 및 조명도 적정 유지 · 숙박업신고증과 접객대에 숙박요금표 게시 등 · 먹는물 수질기준 적정여부 · 생수병 재활용 및 침구류 재사용 여부 ※ 먹는물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수질검사
목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한실(발열기 설치 시) 주변 안전망 설치 ·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편의시설 및 휴식실 (설치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구획 · CCTV설치 시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CCTV설치 안내문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욕실은 매월 1회 이상 소독 실시 · 업소 내 시설 매일 1회 이상 청소 실시 · 발한실 온도계 비치 및 주의사항 안내문 게시 · 업소내 조명도 적정유지 및 환기용 창 설치 ·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비치 금지 · 목욕업 신고증 및 목욕요금표 게시 등 · 욕조수 및 먹는물 수질기준 적정여부 ※ 먹는물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수질 검사, 욕조수 수거검사
이용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기구 보관용기 각각(소독, 미소독) 비치 · 소독장비(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비치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등 설치금지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한 기구와 미소독한 기구를 분리 보관 ·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 · 업소내 신고증, 면허증원본, 이용요금표 게시 · 업소외부(66㎡이상)에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 영업장안에 조명도 75룩스 이상 유지 등
미용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용기구 보관용기 각각(소독, 미소독) 비치 · 소독장비(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비치 ·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 칸막이 설치시 출입문의 3/1이상을 투명하게 설치 · 베드(온열장치포함),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 비치(피부미용 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 빼기, 깃털 뿜기, 쌍거풀 수술, 문신, 박피술 등 유사의료행위 여부 · 의약품(약사법),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사용금지 ·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 · 업소내 신고증, 면허증원본, 이용요금표 게시 · 업소외부(66㎡이상)에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 영업장안에 조명도 75룩스 이상 유지 등
세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용 약품 보관함 설치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수건조기 설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 · 보관중인 세탁물에 곰,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
위생관리 용역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름 25cm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비치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비치 ·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함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장비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시 창문을 열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교육 수시 실시 (작업 전 장비 및 약제사용 주의사항 교육)

- 행정사항 :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및 현장 개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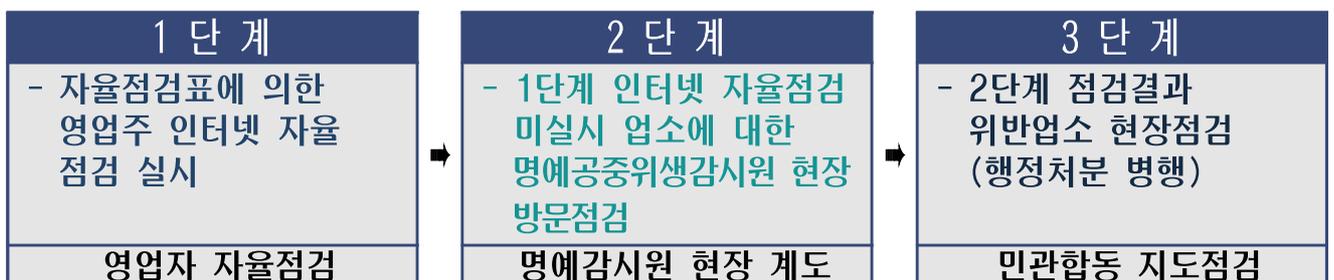
2 목욕장 수질검사 및 위생 지도·점검 실시

- 관련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7조
- 추진기간 : 2016. 2. 1 ~ 5. 31
- 점검대상 : 118개 목욕업소
- 점검인원 : 25명(명예공중위생감시원 22, 공무원 3)
- 점검내용
 -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 목욕장 시설 및 위생관리 기준(목욕실, 옷장, 탈의실 청결상태 등)
- 수질검사
 - 채취수 수거 당일 강남구보건소 의약과(임상병리실)에 수질검사 의뢰
- 행정사항 : 목욕장 수질검사(위생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 ※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 시행



3 공중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

- 관련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 추진기간 : 2016. 4. 1 ~ 7. 31
- 점검대상 : 7개 업종 3,082개 업소
- 점검사항 : 업종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 점검방법
 - 강남구보건소홈페이지(<http://healthpia.gangnam.go.kr>)에 영업주가 업종별 자율점검 항목표(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직접입력
 - ※ 업주 스스로 목욕장 및 숙박업의 먹는물관리를 위생적으로 하도록 중점사항에 포함 시킴
- 추진방향 : 단계별 자율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업소관리



※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 시행



4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 관련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및 제9조
- 추진기간 : 2016. 5. 1 ~ 9. 30
- 측정대상 : 공중이용시설 1,526개소
- 측정항목 : 4개 항목

기 준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 ₂)	포름알데이드(HCHO)
오염 허용기준	24시간 평균치 150 $\mu\text{g}/\text{m}^3$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1,000ppm 이하	1시간 평균치 120 $\mu\text{g}/\text{m}^3$ 이하

- 측정지점 : 시설당 로비, 휴게실, 내부 등 2개 지점 선정
- 측정방법 : 1개소 3명(직원 1, 명예공중감시원 2명)이 현장방문 측정
(미세먼지 10분, 기타 항목 5분)
- 행정사항 : 측정항목 기준 초과 시설(개선권고)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별도 계획수립 시행



5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수준평가 실시 및 공표

- 관련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
- 추진기간 : 2016. 7. 1 ~ 12. 31
- 평가대상 : 숙박업·목욕업·세탁업 653개소
- 평가인원 : 25명(명예공중위생감시원 22, 공무원 3)
- 평가방법
 - 명예공중위생감시원(2인 1조) 및 직원이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업종별 서비스 평가표』에 의거 현지조사 및 평가 실시
- 평가항목
 - 업소의 일반현황과 채점을 통해 평가하는 평가영역으로 구분
 - 평가영역은 업종별 준수사항과 권장사항 및 기타사항으로 분류
- 평가등급
 - 녹색(90점 이상), 황색(80점 ~ 90점 미만), 백색(80점 미만)
(단, 준수사항 미충족업소 : 백색등급 부여)

- 행정사항 : 평가결과 공표(온라인 + 오프라인 공표)
 - 온 라 인 : 229개 기초자치단체 안내 및 홍보 협조공문 발송
 - 오프라인 :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 공표
-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별도 계획수립 시행



6 위생처리업 위생점검 및 물수건 수거 검사

- 점검기간 : 연 2회(4월, 10월)
- 점검대상 : 위생처리업
- 점검인원 : 3명(공중위생팀장 외 직원 2명)
- 점검내용 : 위생점검 및 물수건 수거검사
- 위생점검
 - 시설·설비기준(작업장, 화장실, 창고, 급수시설, 기타위생시설 등)
 - 영업자 준수사항(시설·원료·제품 위생적 관리, 영업신고증 게시 등)
 - 위생관리기준(위생처리기준, 작업장 및 종업원의 위생관리 등)
- 물수건 수거검사
 - 수거대상 : 점검대상 위생처리업에서 생산된 물수건 제품
 - 수거수량 : 제품별(각 호별) 14장
 - 검사방법 : 물수건 수거 당일 4시간 이내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 검사항목 : 물수건 규격기준(외관, 이물, 이취, 대장균, 세균수, 중금속)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첨가물검사팀, 미생물관리팀)
- 행정사항 : 위반업소 행정조치 및 부적합 제품 압류 폐기
- ※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 시행



7 무신고 공중위생 영업행위 단속

- 추진기간 : 2016. 1. 1 ~ 12. 31
- 단속대상 : 무신고 공중위생 영업행위(민원신고 업소 중점 단속)
- 단속인원 : 공중위생팀장 외 직원 2명

□ 행정사항

- 적발업소 행정조치 : 형사고발
- 무신고 고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신고 후 영업하도록 안내문 발송



8 공중위생영업 신고 및 시설조사 등

- 추진기간 : 2016. 1. 1 ~ 12. 31
- 신고대상 : 신규, 변경, 지위승계, 폐업, 재교부 등
- 신고수리 : 즉시(영업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 영업신고증 교부한 후 1개월 이내 시설 및 설비기준 확인
 - 조사대상 : 주소변경 및 신규(필요한 경우) 신고업소
 - 조사방법 : 명예공중위생감시원(2인 1조)이 업소방문 현장 확인
 - 행정사항 : 위반업소 시정 조치



9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 강남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현황
 - 위촉일시 : 2015. 7. 1
 - 위촉인원 : 22명(남자 2명, 여자 20명)
 - 임 기 : 2년
 - 위촉권자 : 서울특별시장
 - 업무범위 :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지도·계몽 등의 활동
 - 주요 활동내용
 - 공중위생업소 시설·설비기준 및 위생 점검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수질검사(채수)
 -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등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직무교육 : 총 8회(정기교육 4, 사업별 4회)
 - 활 동 비 : 1인/1일 50,000원 지급
- ※ 세부계획수립(위생과-1865, 2016.1.21.)



10 공중위생업소 안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반기별 1회(년 2회)
 - 안전점검 대상 : 숙박시설(1,000㎡이상 ~ 5,000㎡미만, 준공 15년 이상 경과 시설물)
 - ※ 단 관광호텔 제외
 - 점검분야 : 건축·전기·가스분야
 - 점검방법 : 건축 등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업소별 방문점검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27조
 - 부적합 업소 조치내용
 - 부적합 업소는 시설관리자에게 시정 이행 서면통지
 - 점검결과를 국가안전정보시스템 입력 및 관리
- ※ 별도 세부계획수립 시행



11 『사랑 헤어샵』 확대 운영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6. 1. 1 ~ 12. 31
 - 추진내용
 - 지정대상 : 50개 → 80개소로 확대운영(관내 이·미용업소 중 사랑 헤어샵 신청업소)
 - 수혜대상 : 관내 만70세 이상 주민
 - 운영형태 : 『사랑 헤어샵』 이용 시 20~50% 할인(자율적 참여)
 - 추진계획
 - 참여업소 모집 : 2016. 2. 12 ~ 3. 10
 - 실적 관리 및 참여업소 의견수렴(분기별 1회)
 - 지정업소 인센티브
 - ▶ 사랑헤어샵 현판 및 우수업체 연말 표창
 - ▶ 이·미용업소 서비스 개선 및 위생물품 우선 지원
 - ▶ 사랑 우수업체 강남홈페이지 및 강남우수업소 가이드북 수록 등 홍보 등
- ※ 세부계획수립(위생과-22037, 2015.9.24.)

제 목		옥외가격표시제 지도·점검	무단폐업업소 일제조사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추진기간		2016. 4. 1 ~ 6. 30	2016. 7. 1 ~ 9. 30	2016. 10. 1 ~ 12. 31
점검(조사)업소		이·미용업소 300개소 ※ 대형업소·소비자의 인지도 높은 업소 등	2015년 위생교육 미필 우편물 반송 업소	259개소(숙박140, 목욕업119개소) ※ 테마선정 별도 계획
점검(조사)인원		25명(명예공중위생감시원 22, 공무원 3명)		
점검방법	1 단계 (실태조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현장 방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현장 방문	명예공중감시원 현장방문 인터넷, 관계부서 등 실태과약 등
	2 단계 (지도점검)	미부착업소 민관합동 점검	무단 폐업 업소 현장 조사(공무원)	위반업소 민관합동 점검
	3 단계 (행정처분)	위반업소	무단폐업 및 교육미필업소 과태료 부과	위반업소
추진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소비자원, 문화일보 등에서 옥외가격표시제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 - 법령 개정 후 3년동안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계도를 하였음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꾸준한 홍보·단속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교육미필업소 중 무단 휴·폐업 업소로 인해 우편 반송 및 과태료체납등발생 - 우편반송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 무단 폐업한 업소는 위생교육미필 과태료부과 취소 및 폐업 신고 안내문 발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 목욕업의 위생관리·시설·설비기준 지도·점검 등 - 이데일리(2015.2.9.) 게스트하우스가 늘어나면서 호텔 이용관광객은 줄고 무신고 숙박도 겸하는 등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는 보도 관련 관광진흥과·관광경찰과 협조 실태 파악 및 꾸준한 합동 단속이 필요

※ 별도 세부계획수립 시행

VIII

소요예산

----- 49,920천원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 40,700천원

○ 산출근거

- 시설등점검 : 50,000원 × 22명 × 25일 = 27,500,000원

- 서비스평가 : 50,000원 × 22명 × 12일 = 13,200,000원

(지급기준 : 1인/1일 50,000원)

○ 집행방법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출근부에 의거 개인별 계좌입금

○ 예산과목 : 위생과, 식품위생관리(보건/식품의약안전), 위생업소관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 공중위생업소 사전점검 안내 등 우편료 : 5,880천원

○ 산출근거 : 300원 × 19,600통 = 5,880,000원

○ 집행방법 : 별도 계획수립 추진

○ 예산과목 : 위생과, 식품위생관리(보건/식품의약안전), 위생업소관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 3,340천원

○ 산출근거 : 16,700원 × 10명 × 20회 = 3,340,000원

○ 집행방법 : 별도 계획수립 추진

○ 예산과목 : 위생과, 식품위생관리(보건/식품의약안전), 위생업소관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

IX

기대효과

□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영업주 자율점검 및 목욕장 수질검사를 통한 공중위생 수준의 질적 향상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공표 및 무신고 영업행위 단속을 통한 공중위생 영업의 경쟁력 제고

□ 구민(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함께하는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위생 사각지대를 일소시킴으로써 구민생활불편 해소

X**행 정 사 항**

- **공중위생업소 실태보고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실적 보고(서울시)**
 - 보고주기 : 매분기(익월 5일한)
 - 보고방법 : 서울행정시스템 전송 보고 등
 - 보고내용 : 업소수, 위반건수, 행정처분건수, 지도점검 건수 등
- **서울행정시스템(위생관리)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항 등 전산입력 철저**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실무교육 실시(4월 중)**
-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